

공익과 관련 있는 경우 범죄혐의자의 성명과 사진을 보도할 수 있어

Frankfurt 고등법원 1990.7.2.결정 -6 W 104/ 90 사건-

#### 관련조문

예술저작권법(KUG) 22, 23 조, 민법 823 조, 기본법 5 조

#### 판결요지

1. 어떤 사람이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불법적인 도박을 하였으며, 세금을 포탈했다는 이유로 수사받고 있는 과정에서 구속된 상태에 있고 그리고 이와같은 보도에 대하여 일반공공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죄혐의자에 관하여 그의 성명을 특정하고 그리고 그의 사진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보도하는 것이 허용된

다.

2. 적어도, 저급한 신문의 경우에 있어서는, 범죄혐의자의 성이 아닌 이름만을 기재하여 보도하는 것도 허용된다.

3.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를 함에 있어서 이름뿐만 아니라 성까지의 게재도 허용할 것인지, 및 그 사진의 게재도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보도가 됨으로써 혐의자가 받을 흥분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까지도 고려될 수 있다.

#### 판결이유

이 사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관한 수사절차의 보도를 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이름 및 성의 게재를 하지말아 줄 것을 요청할 권리는, 이 사친 신청인에게 허용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보도되어야 할 형사절차가 시사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범죄행위가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형사절차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의 성명을 특정해서 보도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사건 신청인에게는 위와 같은 범죄행위 즉 시사성 있고 중대한 범죄행위 가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청인에 대하여는, 범죄단체의 조직, 불법적인 도박 및 세금포탈의 혐의로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건 신청이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행위에 관련해서는 특히 Frankfurt am Main 지방의 범위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공공의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청인 자신에 대하여는, 뇌물과 관련해서 수사가 행해진 일이 없고, 오로지 이는 그의 형제에 대하여 행해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중요한 점이 아니다. 왜냐하면, 위 양자 중의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미 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그 범죄행위는 그 자체로서 이미 중대한 것이어서, 이 범죄사실만으로서도, 이 사건 문제된 사건보도에 있어서, 그 성명을 특정하여 게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도되고 있는 사건은, 현재로서도 아직 시사성을 잃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신청인에게 허가된 구속집행의 면제도 역시 극히 시사성 있는 사건으로서 일반공공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그 성명을 특정하여 보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는 사진의 게재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혐의자의 성명과 사진을 게재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보도에 관련하여 정당한 공공의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임은 당연하다(vgl. Wenzel, Recht der Wort – und Bildberichterstattung, 3. Aufl. S. 249):그러나 위 보도에 관한 공공의 이해관계 이외에도, Frankfurt am Main 지방에 있어서의 신청인의 지위 및 영향력은 막강한 것이어서, 위 보도를 함에 있어서 사진을 게재하는 것도 허용될 정도로 공공의 이해관계가 지대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와같은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고 있는 기사의 정당성은 다루어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이 이 사건 문제된 기사에 있어서 신청인의 이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형태로 기재하는 것은 아니된다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종류의 기사에 관련해서는, 신문의 보도지로서의 성격도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Vgl. Wenzel a. a.O.,5.257).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가족생활이나 사생활과 관련하여서는 사진을 게재하거나 기사를 보도한 바가 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고 있는 사진은 신청인이 그의 집을 막 떠나려고 하는 장면을 찍은 것으로서, 신청인의 사생활이나 내적인 영역을 찍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문제된 기사도 역시, 신청인이 일반 대중의 앞에 나타나는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방문객을 맞아들이는 것만을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도 역시 앞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신청인의 사생활이나 내적 영역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당원은, 이 사건 신청인이 이미 심장이식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에 있고, 따라서 이로 인하여 위와 같은 위험한 수술과 관련해서 신청인의 생명에 혹시라도 위험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의 여부도 역시 고려하였다. 신청인은 그가 심장이식수술을 받지 않으면 아니될 상태라는 점은 이를 소명하였다. 최근에 있어서 신청인은 그 상해가 많이 호전되어서 집을 떠나서 음식점도 방문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에 대한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이 사건 보도가 행해져서는 아니된다고 할 정도는 아닌 것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끝으로, 신청인 본인 및 그의 형제에 대한 수사절차가 바로 이 사건에 있어서의 성명을 특정한 일반적인 언론보도의 대상이었고, 현재도 그러하다는 점이 역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인 바, 이 점은 이미 당원에 현저하게 알려져 있는 바이다.

## 위원동정

위촉된 중재위원

서울중재부 정덕장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1991년 1월 4일부)

서울중재부 이상경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재부 이강국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재부 고현철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대구중재부 박종훈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원중재부 박일환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충북중재부 이우근 (청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북중재부 한정식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경남중재부 김태기 (마산지방법원 부장판사)

(1991년 3월 5일부)

서울중재부 강현중 (변호사 개업)

서울중재부 박태영 (변호사 개업)

서울중재부 김오섭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재부 강봉수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중재부 최덕수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강원중재부 김주형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충북중재부 이국주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전북중재부 변동걸 (사법연수원 교수)

경남중재부 정창환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